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희망찬 농업, 활기찬 농촌,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, Food and Rural Affairs

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

희망의 새시대

공동 보도참고 자료

http://www.motie.go.kr

http://www.mafra.go.kr

http://www.mof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권혜진 FTA협상총괄과장(044-203-5750), 이가영 사무관(5753)
최호천 국내대책과장(044-203-4140), 주정제 사무관(4143)
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축산정책과장(044-201-2311), 홍인기 서기관(2315)
정혜련 동아시아FTA과장(044-201-2061), 김소형 사무관(2064)
해양수산부 윤상린 통상무역협력과장(044-200-5380), 하소형 사무관(5385)

정부, 한 · 호주 FTA의 국회 비준동의 제출

- 한·호주 FTA로 제조업 수출증대(연 1.5조원) 및 생산증가(연 2.4조원) 기대 -
- 농축산업 등 국내 피해산업에 대해 2.1조원 규모의 보완대책도 마련 -

1 한·호주 FTA 국회 비준동의 제출

□ 정부는 지난 **4월 8일 정식서명**된 한·호주 자유무역협정(FTA)의 **비준동의안을 9월 16일 국회에 제출**

□ 정부는 한·호주 FTA가 조속히 발효되어 **보완적 교역구조**를 가진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

○ 호주측은 지난 5월 한·호주 FTA의 의회 심의를 개시하여 **9월~10월 중** 발효를 위한 **국내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**

○ 한·호주 FTA는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**서로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** 또는 **양국이 합의하는 날**에 발효

2 한·호주 FTA 경제영향평가 결과

□ 대외경제연구원, 산업연구원, 농촌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*이 참여하여 한·호주 FTA 발효시 **부문별 경제적 영향**을 분석

※ 대외경제연구원, 산업연구원, 농촌경제연구원, 해양수산연구원, 노동연구원, 조세연구원 등

< 한·호 FTA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 >

실질GDP (발효 후 10년)	소비자후생 (발효 후 10년)	생산효과 (발효 후 15년 평균)			고용 (발효 후 10년)	세수 (발효 후 10년)
		제조업	농축산업	수산업		
0.14%	16.04억불	2.4조원	△1,102억원	△0.45억원	3,007명	평균 △79억원

□ **(거시효과)** 한·호주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**실질 GDP는 0.14%, 소비자 후생**은 약 **16억불**이 **증가**할 것으로 예상

○ 또한 **장기적**으로 **자본 축적**을 통해 한·호주 FTA 발효 후 10년간 고용이 **3천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**

※ 제조업 378명, 농림어업 △481명, 서비스업 3,110명

○ 재정 관련, 연평균 약 79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, 우리나라 **국세수입 규모**(2012년 기준 약 204조원) 감안시, 그 영향은 미미(국세수입의 약 0.04%)

※ 관세철폐에 따른 세수감소(직접효과) 및 수출입·성장 확대에 따른 세수입 증가(간접효과) 등을 고려한 결과

□ **(산업별 영향)** 자동차·일반기계 등 제조업 부문 수출 증가(15년 평균 1.5조원) 등으로 **연평균 2.4조원에 이르는 생산 확대**가 기대됨

○ **농축산업 부문**은 호주로부터의 **쇠고기·보리 등의 수입 증가**에 따라 연평균 약 1,102억원(총 농업생산의 0.22%)의 국내생산 감소 예상

○ **수산업**의 경우 소금·다랑어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소폭 증가하나, 수산물 시장에 미치는 **영향은 제한적**(연평균 약 0.45억원 생산 감소)일 것으로 예상

3 피해산업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 수립

□ **(추진배경)** 한·호주 FTA 발효시 불가피하게 피해가 일부 발생하는 **농축산업 부문**에 대해서는 국내 보완대책이 필요

○ 한·호주 FTA 타결 이후 **농식품부를 중심으로** 기재부·산업부 등 **관계부처, 생산자단체, 전문가 등과 협의**하여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

○ **한·호주** FTA뿐 아니라 통상여건 및 **국내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**이 유사한 **한·캐나다 FTA**('14.3월 타결)까지 종합하여 경쟁력 제고 및 소득안정 방안을 수립

※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한·뉴질랜드 FTA에 대하여는 협상 타결 이후 영향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 마련

□ **(주요내용)** 한·호주 및 한·캐나다 FTA로 피해가 발생하는 축산업 및 재배업 부문에 대해 총 2.1조원 규모의 추가지원계획을 수립

○ **(축산업)** 기존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한우산업 발전방안 등 축종별로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

- 또한 축산업 전반의 선진화를 위해 분뇨·악취 관리 등 친환경 축산대책을 강화하고, FTA 환경을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출확대 방안 등을 추가

○ **(재배업)** 피해품목(보리·콩·감자·양파·마늘)에 대한 수확 후 품질관리 인프라 확충, 수요 확대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

○ **(투·융자계획)** 향후 10년간('15~'24) 총 2.1조원을 추가 지원하고, '15년 예산안에도 이를 반영하여 기존계획 대비 2,577억원을 증액 (13,918억원(기존 사업예산 포함))

< 참고 1. 한 · 호주 FTA 협상 추진경과 >
< 참고 2. 한 · 호주 FTA 경제영향평가 결과 >
< 참고 3. 한 · 영연방 FTA 국내 보완대책 >
< 참고 4. 한 · 호주 교역 · 투자 동향 >

참고 1 한·호주 FTA 협상 추진경과

□ **'09.5월**, 협상개시 선언 후 '10.5월까지 총 5차례 공식협상 개최

○ 투자자-정부 소송제도(ISD : **I**nvestor **S**tate **D**ispute settlement) 조항의 한·호 FTA 반영 여부 및 상품양허 관련 입장차로 협상 중단

□ '10.8월~'12.7월까지 총 8차례 비공식회의 개최

□ **'13.11.15**, 한·호 통상장관회담시 FTA 공식협상 재개합의

□ **'13.11.15**, 제6차 한·호 FTA 공식협상 개최

○ ISD 및 상품시장 개방 이슈 등 주요 쟁점사안의 절충안 모색

□ **'13.12월**, WTO 각료회의 계기 제7차 한·호 FTA 공식협상 개최

□ **'13.12.4**, 한·호 통상장관회담시 한·호 FTA 협상의 실질타결 확인

□ **'14.2.10, 한·호 FTA 영문협정문 가서명**(initialing)

* 호측 요청으로 2.14일 협정문 내용을 요약·정리하여 대외발표

□ **'14.2.17, 한·호 FTA 영문협정문 공개**(www.fta.go.kr)

○ '14.2.24, 한·호 FTA 한글 협정문(초안) 공개

□ **'14.4.8, 한·호 FTA 정식서명**(양국 통상장관)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참고 2 한·호주 FTA 경제영향평가 결과

1 국내경제 전반적 영향 : GDP 및 후생수준

※ KIEP <한·호주 FTA의 경제적 영향 분석, 2014. 4월>

가. 분석모형

□ 대외경제연구원에서 연산가능 일반균형 분석모델을 사용하여, 한·호 FTA 발효에 따른 GDP 및 소비자 후생효과 분석

○ 한·미, 한·EU FTA가 旣 발효됨을 감안, 한·호 FTA에 따른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생산성 증대효과는 미반영

※ 한·미 FTA와 한·EU FTA 등 최근 발효한 양허안에 따른 시장개방 수준 기준으로, 한·호 FTA가 2015.1.1일 발효되는 것으로 가정

나. 분석결과

※ 한·호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생산의 측면에서는 실질 GDP의 추가적인 증가, 소비측면에서는 소비자 후생수준의 변화로 측정

□ **(GDP)** 한·호 FTA 발효에 따라, 단기적(발효 후 5년)으로 실질 GDP는 추가적으로 0.07% 증가, 장기적(발효 후 10년)으로는 약 0.14% 증가

□ **(소비자후생)** 한·호 FTA 발효에 따라, 소비자 후생은 5년에 걸쳐 11.13억불, 10년에 걸쳐서는 16.04억불 증가

※ 소비자 후생은 한·호 FTA가 발효되기 전 가계가 구입했던 상품묶음을 한·호 FTA 발효 이후 동일하게 구매하고 남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동등변화 방식으로 측정

<한·호주 FTA의 거시경제 효과(누적) : 실질 GDP 및 후생>

구 분	단기 (5년)	장기 (10년)
실질 GDP 추가 증가율	0.07%	0.14%
후생 수준 증가분	11.13억불	16.04억불

2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

1 제조업 ※ KIEP <한·호주 FTA의 경제적 영향 분석, 2014. 4월>

□ **(수출입)** 자동차, 일반기계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대폭 증대, 수입은 원유 등 원자재 중심으로 확대 **(발효후 15년 평균 5.2억불 흑자)**

□ **(생산)** 수출 증대에 따라, 자동차, 철강, 전기전자 및 화학 산업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 **(발효후 15년 평균 24억불 생산증가)**

< 한·호 FTA 발효에 따른 제조업 생산변화 (연평균 기준, 단위 : 백만불) >

구 분	발효 후 1~5년 평균	발효 후 1~10년 평균	발효 후 1~15년 평균
총계	874	1,663	2,426

2 농축산업 ※ KREI <한·호주 FTA 농업분야 영향분석, 2014. 8월>

□ **(수출입)** 쇠고기, 보리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(발효후 15년 평균 310억원), 수출 확대효과는 미미

□ **(생산)** 호주산 농산물 수입 증가(대체효과 포함)로, 발효 이후 15년차까지 **연평균 1,102억원 생산감소** 예상**(15년 누적 1조 6,523억원)**

※ 생산 감소의 약 81%가 쇠고기, 돼지고기(대체효과에 기인) 등 축산업 부문에서 발생(15년 누적 기준)

< 한·호 FTA 발효에 따른 농축산업 생산변화 (단위 : 억원) >

구 분	5년차	10년차	15년차	15년 연평균	15년 누적
ㅇ 재배업(곡물, 채소류 등)	185	250	270	203	3,044
ㅇ 축산업	485	1,100	1,991	899	13,479
합 계	670	1,350	2,261	1,102	16,523

3 수산업 ※ KMI <한·호주 FTA 수산 분야 영향 분석, 2014. 4월>

□ **(수출입)** 발효 후 소금, 다랑어를 중심으로 **연평균 80만불 수입 증가**, 수출은 조미김, 다랑어 통조림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 예상

□ **(생산)** 한·호 FTA가 **국내 수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**(발효후 15년 평균 0.45억원 생산감소)

※ 호주산 소금은 국내 천일염과 상품형태가 다르고 식용과 비식용 시장이 구분되어 있으며, 다랑어는 수입증가 예상 물량이 약8톤 정도로 전체 국내시장의 0.05% 수준에 불과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3 국내 고용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

※ KIEP <한·호주 FTA의 경제적 영향 분석, 2014. 4월>

가. 분석방법

□ 대외경제연구원의 거시경제영향 분석결과를 기초로, 노동연구원과 조세연구원에서 고용 및 재정에 대한 영향분석을 각각 수행

나. 분석결과

□ **(고용)** 한·호 FTA 발효 후, 10년간 서비스업과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총 3,007명 증가예상

○ 제조업, 서비스업의 고용은 단기와 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하나, 농수산부문은 발효 10년 기준으로 총 481명의 고용감소 예상

< 한·호 FTA 발효에 따른 산업별 고용효과(단위 : 명) >

구 분	발효 후 5년(2019년)	발효 후 10년(202[illegible]년)
농수산업	△268	△481
제조업	140	378
서비스업	1,700	3,110
합계	1,572	3,007

□ **(재정)** 한·호 FTA 발효 후, 10년간 평균 79.2억원의 세수감소 예상

○ 발효 후 5년간은 연평균 601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나, 6~10년간은 연평균 443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어 평균적으로는 세수가 79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

※ 단, 우리나라의 국세수입이 200조원을 넘는 것을 감안하면, 한·호 FTA 발효가 우리나라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

< 한·호 FTA 발효에 따른 세수영향(단위 : 억원) >

구 분	세수 감소			성장에 따른 세수증가	세수변화
	관세수입 감소	수입분 내국세 감소	소계		
1~5년차	△1,654.9	△97.9	△1,752.8	1,151.2	△601.6
6~10년차	△3,092.2	△130.3	△3,222.5	3,665.6	443.1
연평균	△2,373.5	△114.1	△2,487.6	2,408.4	△79.2

참고 3 한·영연방 FTA 국내 보완대책

1 기본방향

□ **영연방 3국**(호주·캐나다·뉴질랜드)**을 포괄**하여 피해산업에 대한 국내 대책을 수립하되, 산업별 취약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**경쟁력 제고 중점 지원**

□ **투융자계획**은 향후 **10년간**('15~'24)**의 추가 지원금액***을 **15년간**('15~'29)**의 총 피해액 수준과 균형**되도록 마련

□ **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** 등 피해보전장치는 급격한 수입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**제도를 보완하여 지속 운용**

□ 정책효과가 배가되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**세제 및 제도 개선과제 발굴**

2 세부 추진방안

가. 축산업 경쟁력 강화

□ **(생산비용 절감) 가축비·사료비** 절감 및 **가축질병 근절방안** 강구

□ **(품질 차별화)** 수입육과의 차별성 확보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**가축개량 강화 및 연구개발** 적극 추진

□ **(유통·가공)**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한 **유통구조 개선 및 식육가공산업 육성**

□ **(수급)** 축종별(한우·양돈·낙농·산란계·육계·오리) **수급조절협의회 활성화** 및 **관측·통계**(한우 수급모형, 낙농 통계관리시스템 등) **정비**

□ **(성장동력 창출)**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 및 산지생태축산 활성화

나.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

□ **(가축분뇨 적정처리)** 시설 확충 및 민간 전문가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, 연구개발을 통한 **가축분뇨 자원화 촉진**

□ **(악취관리 강화)** 사전에 악취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고, 발생된 악취는 포집·희석 등을 통해 **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대책 강화**

□ **(친환경 축산 활성화)** 직불금 지원 내실화 및 인증제 정비, 유통기반 구축을 통한 **친환경 축산물 생산·공급 활성화**

다. 원예작물(마늘 · 양파)

□ **(생산기반 강화)** 생산·유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**주산지 육성 추진**

□ **(수급안정)** 관측 고도화 및 지역단위 수급조절 기능 강화, 소비기반 확대를 통한 **안정적인 수급관리** 추진

□ **(소득안정)** 수확량 감소 및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수입 감소를 보험으로 보전하는 **양파 수입보장보험 도입 추진**('14 : 도상연습 → '15 : 시범사업)

라. 식량작물(보리 · 콩 · 감자)

□ **(보리) 수확 후 품질관리 인프라 확충** 및 가공업체와의 연계 등을 통한 **소비기반 확대**

□ **(콩) 생산의 효율성**을 높이고 **산지유통을 규모화·전문화**하는 한편, **가공용 소비확대**를 통한 안정적 소비기반 구축

□ **(감자) 가공용 수입감자의 국산 대체** 및 생산자단체(농협 등) 주도의 **계약재배 활성화 추진**

3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

□ **(금리인하)** 농가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사업 등을 대상으로 **지원금리 0.5%P 인하***(3% → 2.5%) 및 **인센티브자금 지원 확대****

* 농가사료직거래자금, 조사료생산기반 구축,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

** 도축·가공업체지원('14 : 300억원 → '15 : 500), 가축계열화사업('14 : 90억원 → '15 : 150)

□ **(세제지원)** 농가 생산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관련세제 지원

○ **(영농상속공제)** 원활한 영농상속을 통한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한 **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완화***하고, **한도 증액·공제재산 범위 확대**(관계부처 협의) **검토**

*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토록 한 상속인 요건을 상속세 신고기간까지 영농에 종사하면 해당되는 것으로 완화('14년 중 상증법 개정 추진)

○ **(부가세 사후환급 확대)** 농업 여건 변화에 따라 **활용도가 높아진 기자재 5종***을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(현행 총 47종 → 52종, '14년 중 개정)

* (축산 4종) 착유용 라이너, 분만실 깔판, 대인소독기, 방역복, (재배 1종) 양파·마늘망

○ **(축사용지 양도세 감면)** '14.12.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제도를 **'17.12.31일까지 연장**('14년 중 조특법 개정 추진)

○ **(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)**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**액비 운송·살포차량 추가**('17년)

* 농림사업정보시스템,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정비 등 부정유통방지대책 마련 이후 시행('17년)

□ **(피해보전직불 및 폐업)** 피해보전비율 상향 검토 및 운용기간 연장*

* '15년 발효 가정시 : 직불('11~'21 → '24년까지), 폐업('11~'16 → '19년까지)

4 투융자 계획

□ **(총 지원규모)** 한·호주 및 한·캐나다 FTA*에 따른 **피해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안정**을 위하여 **10년간('15~'24) 총 2.1조원 추가 지원**

* 뉴질랜드는 협상 타결 후 영향분석 결과 등 고려하여 필요시 지원대책 추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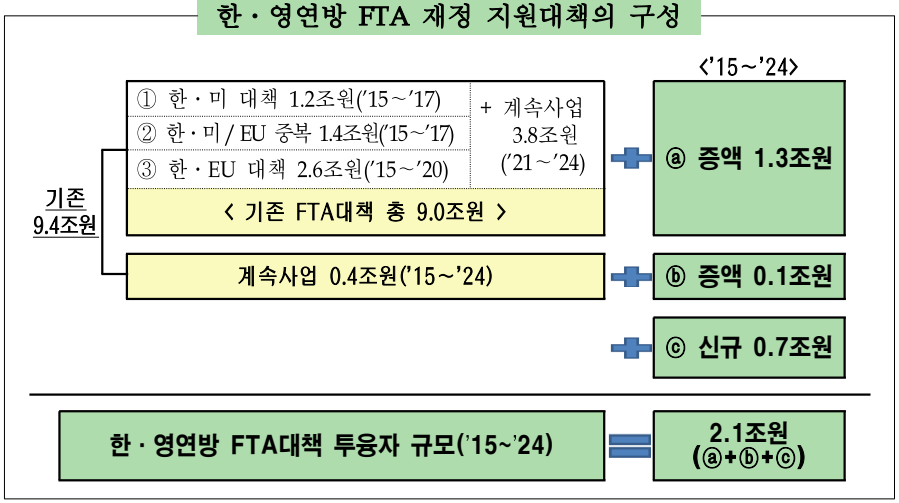
< 총 투융자계획('15~'24) > (단위 : 억원)

구분	한미/한EU사업(17개)	계속사업(5개)	신규사업(12개)	합계(34개)
기존계획	90,235	4,032	-	94,267
추가지원	13,122	1,367	6,997	21,486
합계	103,357	5,399	6,997	115,753

□ **('15년 예산안)** 영연방 FTA 조기 대응을 위하여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**사업예산 13,918억원을 반영할 계획**(기존계획 대비 2,577억원 증액)

* 경쟁력 제고대책과는 별도로, 일시적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품목에 대하여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('15년 예산에 2,032억원 반영)

한·영연방 FTA 재정 지원대책의 구성



참고 4 한·호주 교역·투자 동향

□ 교 역

《단위 : 백만불, ()는 증감률 / 자료출처: 한국무역협회》

구 분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
수 출	4,692 (23.1)	4,691 (-)	5,171 (10.2)	5,243 (1.4)	6,642 (26.7)	8,164 (22.9)	9,250 (13.3)	9,563 (3.4)
수 입	11,309 (14.7)	13,232 (17.0)	18,000 (36.0)	14,756 (△18.0)	20,456 (38.6)	26,316 (28.7)	22,988 (△12.6)	20,784 (△9.6)
무역수지	-6,617	-8,541	-12,829	-9,513	-13,814	-18,152	-13,738	-11,221
총교역액	16,001	17,923	23,171	19,999	27,098	34,480	32,238	30,347

※ '13년 기준 호주는 우리의 제6위 교역파트너 (수출 10 위, 수입 7위)

□ 투 자

《단위 : 천불, ()는 신고건수 / 자료출처: 산업통상자원부 · 한국수출입은행》

구 분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	누
호주의 대한국 투자	923,535 (30)	46,981 (24)	68,549 (35)	224,515 (33)	7,247 (24)	90,186 (22)	152,569 (27)	50,491 (22)	'73~'13> 2,20 ,6 7 (465)
한국의 대호주 투자	189,049 (79)	155,185 (115)	652,716 (135)	1,250,931 (122)	766,338 (107)	4,141,903 (90)	4,406,856 (78)	1,686,871 (76)	<68~'13> (1,450)

※ '13년 현지법인 신고금액 기준 호주는 대한국 제16위 투자주체, 한국의 제5위 투자대상

□ 한국의 對호주 10대 교역품목 현황(2013년)

《MTI 4단위 / 자료출처: 한국무역협회, 관세청》

수출품목	관세율(%)	금액(백만불)	비중(%)	수입품목	관세율(%)	금액(백만불)	비중(%)
경유	0	2,219	23.2	철광	0-2	5,984	28.89
승용차	5-10	1,964	20.5	유연탄	0	5,170	24.87
휘발유	0	885	9.3	원유	3	1,750	8.42
철구조물	5	656	6.9	가축육류	3-72	862	4.15
제트유 및 등유	0	363	3.8	알루미늄괴 및 스크랩	0-3	777	3.74
자동차부품	0-10	279	2.9	동광	0	742	3.57
건설중장비	0-10	148	1.5	기타금속광물	0-6.5	599	2.88
합성수지	0-5	136	1.4	무연탄	0	512	2.46
칼라TV	5	134	1.4	천연가스	3	451	2.17
전선	0-10	116	1.2	곡류	0-800.3	433	2.08
소 계		6,900	72.1	소 계		17,280	83.08
전 체		9,563	100	전 체		20,785	100

※ MTI4단위를 HS4단위와 연계하여 관세율 계산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